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구덕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13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4월 19일

발 의 자 : 강구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남창진, 이상묵, 주찬식,
박성숙, 이복근, 우미경,
이석주, 송재형, 김희걸 의원
(9명)

1. 제안이유

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“범위 안에서” 및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산식”을 “계산식”으로, “약간”을 “몇”으로,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,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, “해외”를 “국외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함.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21조,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산식”을 “계산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약간”을 “몇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1조제9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1조제11항 본문 중 “해촉 할”을 “위촉 해제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3.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.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<u>산식</u>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산식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업협의회)의 구성·운영)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<u>약간</u> 명을 두되,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원이 되며, 서기는 사업협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다.</p> <p>5.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<u>대하여</u>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9조(사업협의회)의 구성·운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몇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<u>대해</u> <u>서는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~⑧ (생략)</p> <p>⑨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<u>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⑩ (생략)</p> <p>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<u>치료를 요하는</u>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<u>해외여행</u>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2. 위원 스스로가 <u>해촉</u>을 원할 때</p> <p>3.~4. (생략)</p>	<p>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<u>범위에</u> <u>서</u> ----- --.</p> <p>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<u>할</u> -----.</p> <p>1. ----- <u>치료가</u> <u>필요한</u> ----- <u>국외</u>-----</p> <p>2. ----- <u>위촉 해제</u>를 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<u>의하여</u> 제척의 결정을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 <u>따라</u> -----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“자구수정”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강 구 덕